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이행실태 보고서

(점검대상기간 : 2023.01.01~2023.12.31)

2024.01.19

NICE신용평가(주)(이하 “NICE신용평가”)는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개척해 온 선도적 신용평가회사로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신용평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왔으며, 활발한 연구활동 및 신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등 신용평가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원칙의 준수를 위해 기본적인 덕목과 행동양식을 명문화한 최상위 규정인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2006년 5월 제정하였고, 이후 수 차례(2010년 1월, 2013년 11월, 2020년 1월)에 걸쳐 개정해 왔습니다. 해당 사항은 NICE신용평가 홈페이지(<http://www.nicerating.com>)에 공시되어 있으며, NICE신용평가는 이를 구체화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04년 12월 제정하고 2008년 5월 및 2015년 3월 개정하여 전세계 신용평가기관에게 적용을 권고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신용평가회사로서 NICE신용평가가 확보하고자 하는 신용평가과정의 품질과 공정성,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신용등급 이용자(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투자자 등)에 대한 책임, 그리고 Code of Conduct 공시 및 적용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동 Code of Conduct의 준수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내부교육과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1년간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의 항목별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밝히고자 합니다.

1. 신용평가과정의 품질과 성실성

A. 신용평가 과정의 품질

■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의 수립과 적용

- NICE신용평가는 체계적이며 가능한 한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일정 형태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도출할 수 있는 신용평가방법론(이하 '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 NICE신용평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방법론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금융상품 및 업종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 점검대상기간 중 신용평가일반론을 조정하면서 4개 부문(개관3. 신용평가 절차:0201 개관3. 신용평가 절차:0327, 기초7. 단기등급 평가, 하이브리드 증권 신용평가)을 개정하였습니다. 산업별 평가방법론 10개 부문(비금융일반기업, 금융일반기업, 발전업, 기타서비스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자동차업, 조선업, 제지업, 철강업), 공공부문 평가방법론 1개 부문(정부신용평가), SF평가방법론 2개 부문(Master Trust,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별 평가방법론 1개 부문(물류업)을 제정하였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평가방법론을 신규로 제정하거나 기존 평가방법론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개정안을 신용평가에 직접 적용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종본은 대외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과 당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방법론 공시 현황(2023.1.1~12.31)]

번호	구분	신용평가방법론	공시일	비고
01	신용평가일반론	개관3. 신용평가 절차	2023.02.01	개정
02	신용평가일반론	개관3. 신용평가 절차	2023.03.27	개정
03	신용평가일반론	기초7. 단기등급 평가	2023.07.03	개정
04	신용평가일반론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2023.07.06	개정
05	산업별 평가방법론	비금융일반기업	2023.01.31	개정
06	산업별 평가방법론	금융일반기업	2023.01.05	개정
07	산업별 평가방법론	발전업	2023.02.01	개정
08	산업별 평가방법론	기타서비스업	2023.04.11	개정
09	산업별 평가방법론	생명보험업	2023.04.18	개정
10	산업별 평가방법론	손해보험업	2023.04.18	개정
11	산업별 평가방법론	자동차업	2023.12.20	개정
12	산업별 평가방법론	조선업	2023.12.22	개정
13	산업별 평가방법론	제지업	2023.12.22	개정
14	산업별 평가방법론	철강업	2023.12.22	개정
15	공공부문 평가방법론	정부신용평가	2023.02.14	개정
16	SF평가방법론	Master Trust	2023.01.17	개정
17	SF평가방법론	신용카드 매출채권	2023.01.17	개정
18	산업별 평가방법론	물류업	2023.04.11	제정

■ 신용평가 과정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 NICE신용평가는 평가방법론에 따라 평가과정에서 획득한 제반 정보를 충실히 분석하여 신용등급 및 분석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2)
- NICE신용평가는 적합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신용등급 결정 시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수집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3)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평가대상법인의 비협조로 신용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등급 부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1.4)
-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하는 NICE신용평가의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평가방법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5)
-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 채무자 및 채무의 신용위험에 대해 적용할 신용등급체계를 기호화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6)
- 신용등급은 NICE신용평가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신용평가전문인력 개인 혹은 개별 부서가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NICE신용평가의 모든 신용등급 결정 권한은 내규에서 정한 신용등급평정위원회에서 보유하며,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평가업무규정, 신용평가업무세칙, 신용등급평정위원회운영지침 등의 성문화된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1.7)
-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법인 또는 채무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별 신용평가 수행 시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 실무팀과 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

B. 공시 이후 신용등급의 사후관리

- NICE신용평가는 관계 법규와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신용평가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자료 및 기록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설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9)
-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보고서가 이용자를 오도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환경변화가 기업의 신용위험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 스페셜리포트, 마켓코멘트, 그룹분석보고서 등을 공시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10)

C. 신용평가 과정의 성실성

- NICE신용평가는 고품질의 신용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고, 수행한 업무량 대비 보유 신용평가전문인력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1)
- NICE신용평가는 신규 신용평가서비스의 실시, 기존 평가대상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금융상품의 평가 등에 대한 정책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정책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
- NICE신용평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평가방법론과 평가모델 및 이에 대한 주요한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13)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을 선정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용평가과정에서의 편향을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14)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효력이 존재하는 동안 신용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및 재원을 할당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15)

-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규정, 신용평가업무세칙, 정기평정실시 지침, 내부심사운영지침 등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용등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5.1)
-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 변경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신용등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5.2)
- ✓ NICE신용평가는 정기 및 수시 검토 결과 신용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15.3)
- ✓ NICE신용평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련 신용등급에 관한 평가방법론, 평가모델 또는 주요 평가가정의 변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1.15.4)
- NICE신용평가는 최초 신용등급 결정과 사후관리에 대해 별개의 분석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조직은 필요한 전문성 및 자원을 갖추어 각각의 기능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별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16)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보고서의 배포, 신용등급의 취소 및 철회 등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17)

D. 신용평가 과정의 공정성

-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에 대해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1.18)
-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은 엄격한 윤리기준과 공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NICE신용평가는 이를 저해하는 임직원이 고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19)
-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에게 특정 신용등급에 대해 평정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특정 신용평가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확약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20)

-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신용평가 또는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대한 수료를 수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신용등급에 대한 약속 또는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1.21)
-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대상법인 또는 채무자의 활동에 대해 제안 또는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동 활동에는 평가대상법인 또는 채무의 법적 구조, 자산 및 부채, 영업활동, 투자계획, 자금조달, 사업결합 및 구조화 금융상품의 설계 등이 해당됩니다. (1.22)
 - ✓ 단, NICE신용평가와 그 임직원이 본 금지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위험 평가를 위해 (1) 당해 채무자 또는 채무에 대한 특정 사실이나 특성 및 채무자가 제안한 수정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과 (2) 당사의 평가방법론이 채무자 또는 채무에 적용될 때 신용평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논의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1.22.1)
- NICE신용평가는 NICE신용평가 및 임직원이 본 Code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1.23)
 - ✓ NICE신용평가의 준법감시부서는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의 본 Code 및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23.1)
 - ✓ NICE신용평가의 준법감시부서는 본 Code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3.2)
 - ✓ NICE신용평가는 관계 법규 및 내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준법감시인의 보고체계와 보수는 신용평가업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23.3)
-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여 임직원 또는 관계인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또는 본 Code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준법감시부서는 법규 또는 내규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취하며, 보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복행위나 위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24)

2.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A. 총칙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NICE신용평가,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경제적, 정치적, 기타 영향 포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1)
-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전문적 판단과 성실한 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물론 외형적으로도 독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2)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만을 고려합니다. (2.3)
- NICE신용평가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NICE신용평가(또는 관계회사)와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또는 관계회사) 및 기타 당사자 간 사업관계의 존재 여부 혹은 장래 사업관계의 구축 가능성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335조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7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항에 따라 NICE신용평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서 교부 시 신용등급을 공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NICE신용평가가 평가대상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반대로 평가대상법인이 NICE신용평가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 “NICE신용평가(주)의 발행사에 대한 신용평가 적정 여부”를 함께 발부하고 있습니다. (2.4)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와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며, 가능한 경우 물리적으로도 분리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를 운영할 경우에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2.5)

B. 정책, 절차, 통제 및 공시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판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하고 제거·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의 준법감시부서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상충 관계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
- NICE신용평가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공시할 때에는 완전하고, 적시에, 구체적으로 공시합니다. (2.7)
-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법인과 체결한 수수료 약정의 일반적인 성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2.8)
 - ✓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로부터 신용평가업무 또는 부수업무와 관련 없는 보수를 수령한 경우 동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법인과 관련한 신용평가계약 및 비평가용역계약 실적과 관련한 최근 2년간 내역(신용평가용역과 비평가용역 건수 및 수수료 총액), 평가대상법인이 기업집단일 경우 해당 부문 전체 수수료 중 그 기업집단의 수수료 비중, 평가대상법인의 다른 신용평가 및 비평가용역 수행 여부, 신용평가용역 관련일자(평가개시일, 계약체결일, 평가완료일) 등을 평정요지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2.8.1)
 - ✓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관계회사 포함)로부터의 수수료 수입이 NICE신용평가 연간 매출의 10% 이상일 경우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2.8.2)
- NICE신용평가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발행자 및 자산보유자 등 본 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2.9)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지 않습니다. (2.10)
- 신용평가대상이 NICE신용평가를 감독하는 직능을 수행하는 경우,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와 감독대응 업무에 각각 별도의 직원을 배치합니다. (2.11)

C. 임직원의 독립성

- NICE신용평가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보고라인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12)
 -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을 그가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과 연동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12.1)
 - ✓ NICE신용평가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정책 및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12.2)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을 위해 신용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전문인력은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수수료 협의 및 매출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영업조직은 신용평가 계약의 체결 및 평가 의뢰·권유 등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영업관리를 담당하며, 기업RM본부, 금융RM본부, SF RM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평가조직은 평가정책본부, 기업평가본부, 금융평가본부, SF평가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평가정책본부의 본부장 및 부서장, 각 평가본부의 본부장 및 부서장, 그리고 평가정책본부 전문평정위원을 포함한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서 평가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등급제시부서 소속인원 제외)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조직이 신용등급평정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2.13)
-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의 참여자 전원이 직접 평가대상법인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4)
 - ✓ 임직원(배우자 포함)이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단, 펀드, 수익증권, 인덱스상품 등 개별

증권에 대한 운용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2.14.1)

- ✓ 임직원(배우자 포함)이 신용평가대상과 관련된 업체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소유로 이해상충이 초래될 수 있거나 초래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경우 (2.14.2)
- ✓ 임직원(배우자 포함)이 최근에 신용평가대상에게 고용된 적이 있었거나 신용평가대상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초래될 수 있거나 초래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경우 (2.14.3)
- ✓ 임직원의 친척(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이 현재 신용평가대상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2.14.4)
- ✓ 기타 신용평가대상과의 현재 또는 과거의 관계로 인해 이해상충이 초래될 수 있거나 초래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경우 (2.14.5)

○ NICE신용평가의 신용평가전문인력(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은 자신이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단, 펀드, 수익증권, 인덱스상품 등 개별 증권에 대한 운용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NICE신용평가는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 및 거래내역”을 준법감시부서에 신고하도록 내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신고 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또는 보유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관련 법규 및 내규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15)

○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은 NICE신용평가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금전, 물품 또는 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할 수 없고, 내규에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관련 법규를 반영하여 임직원의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의 수령 및 제공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내규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참여자 전원에 대해 편익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한편 신용평가업무 관련 편익제공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6)

-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가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과 사적인 관계에 있는 등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준법감시부서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준법감시부서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17)
- 신용평가전문인력이 퇴직하면서 동 신용평가전문인력이 관여한 신용평가대상이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거래했던 금융회사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NICE신용평가는 동 신용평가전문인력의 과거 업무를 검토하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18)

3.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투자자 등 신용등급 이용자에 대한 책임

A.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의 본질 및 적용 한계에 대한 투자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NICE신용평가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1)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절차와 평가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 투자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가 신용평가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2)
- NICE신용평가는 평가방법론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NICE신용평가 웹사이트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매체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중요 변경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3.3)
- NICE신용평가는 무의뢰 신용평가를 수행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할 경우, 신용등급의 부여와 관련한 정책 및 절차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3.4)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보고서의 배포, 신용등급의 취소 및 철회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3.5)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분류 및 정의, 부도의 정의 등 제반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3.6)
- NICE신용평가는 별도의 신용등급 식별표식을 사용하여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을 다른 신용등급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3.7)
- NICE신용평가는 투자자를 포함한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 등에게 관련 채무자 신용등급(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또는 채무신용등급에 대한 신용평가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8)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부여 혹은 조정 전에 평가대상법인에게 신용평가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및 고려사항에 대해 알리고 정확한 신용등급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
 - ✓ NICE신용평가와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평가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평가대상법인에게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을 알리고 이에 대한 평가대상법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동 의견수렴의 정도 및 형식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3.9.1)
 - ✓ NICE신용평가는 평가절차가 완료되면 공시 이전에 평가대상법인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며, 평가대상법인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9.2)
 -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부여 또는 조정 이전에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및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대상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대상법인에게 최대한 빨리 이를 통지하고 통지가 지연된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9.3)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3.10)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결과를 공시할 때 모든 정보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3.11)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결과를 공시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신용평가과정

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12)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의 적용 한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평가의견의 특징과 한계, 평가대상 법인, 자산보유자 또는 주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검증 여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13)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최근 등급확정일 및 직전 등급부여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14)
 -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을 공시할 때 신용등급 결정에 사용된 주요 평가방법론, 평가방법론 버전, 평가방법론을 찾아볼 수 있는 위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14.1)
 -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이 두 개 이상의 평가방법론에 기초하거나 주요 평가방법론만 검토하여 투자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가 신용등급의 중요한 측면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14.2)
- NICE신용평가는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시 발행자 또는 자산보유자가 동의한 경우 구조화 금융상품의 손실가능성 및 현금흐름분석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금융시장 전문가가 평가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기초적인 평가 가정이 수정될 경우 가정 변경에 대한 신용등급의 민감도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3.15)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부여 혹은 조정 시 그 사유 및 근거를 제시·설명하고 있습니다. (3.16)
 - ✓ 본/정기/수시평가에 의한 등급부여 및 조정 시 평가사유 및 근거를 설명하는 평정요지를 NICE신용평가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필요 시 동 보도자료를 관련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3.16.1)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검토에 필요한 자료입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공시한 신용등급을 계속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여한 신용등급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철회 또는 유보를 공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최근 등급확정일을 명시합니다. (3.17)

- NICE신용평가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가 다른 신용평가회사의 실적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부도율, 평균누적 부도율표 및 신용등급 변화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3.18)

B. 기밀정보의 관리

- NICE신용평가는 기밀정보 및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19)
 - ✓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법인이 제공한 기밀정보를 신용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다만, 기밀유지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3.19.1)
 - ✓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은 기밀유지계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별도의 기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평가대상법인이 기밀유지를 요청한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는 기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19.2)
 - ✓ 법규에 의거 감독기관, 법원, 검찰 등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19.3)
- NICE신용평가는 기밀정보 및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취급과 사용을 규제하는 관련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20)
- NICE신용평가는 기밀정보 및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하는 등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21)

4.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임직원 연수

- 본 Code는 NICE신용평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4.1)
- NICE신용평가는 준법감시부서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며, 내부통제체제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2)

- ✓ NICE신용평가의 준법감시부서는 본 Code의 절차 준수 여부 실태를 점검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Code of Conduct 이행실태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4.2.1)

- NICE신용평가는 NICE신용평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으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4.3)

5. 공시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 NICE신용평가는 본 Code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공시사항을 완전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적시에, 그리고 투자자 및 신용평가 이용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5.1)
- NICE신용평가는 IOSCO의 신용평가사 활동원칙(IOSCO Principles Regarding the Activities of Credit Rating Agencies) 및 기본행동강령(IOSCO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의 각 조항을 지지하며, 동 조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NICE신용평가는 사업방식과 모범사례 및 국내 감독기관이 채택한 법규에 좀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IOSCO의 기본행동강령의 조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들은 NICE신용평가가 매년 공시하는 “Code of Conduct 이행실태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2)
- NICE신용평가의 준법감시부서는 시장참여자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 불만사항(기밀유지조건의 불만사항 포함)을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불만사항을 검토하여 경영진 보고의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5.3)
- NICE신용평가는 웹사이트(www.nicerating.com)에 (1) 본 Code of Conduct, (2) 사용 중인 평가방법론에 대한 설명, (3) 과거 평가실적에 대한 Rating Performance, (4) 본 Code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5.4)

[첨부] 최근 5년간 평가방법론 제정, 개정 현황

구분	유효 기준 방법론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용평가 일반론	개관 1. 신용평가 개요	개정		개정		
	개관 2. 신용평가 체계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관 3. 신용평가 절차	개정				개정
	기초 1. 신용등급 결정		개정			
	기초 2. 사업위험 평가				개정	
	기초 3. 산업위험 평가				개정	
	기초 4. 재무위험 평가			개정		
	기초 5. 계열관계 반영		개정			
	기초 6. 채무특성 반영				개정	
	기초 7. 단기등급 평가			개정		개정
	제 3 자 요청 평가					
	기업집단내 소속기업에 대한 지원				폐지	
	중단사례가 발생시 신용평가					
	하이브리드증권 신용평가				개정	개정
	지주회사 신용평가		개정			
	리츠 신용평가	제정	개정		개정	
	경기순환과 신용등급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개정	
	M&A 와 신용평가					
	자산유동화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평가방법론 (비금융)	Bank Loan 신용평가					
	벤처기업 신용평가	폐지				
	부도정책		제정	개정		
	ESG 와 신용등급			제정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 1		개정		개정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 2		개정		개정	
	자동차					개정
	자동차부품		개정			
	조선	개정				개정
	철강					개정
	비철금속			개정		
	정유			개정		
	석유화학	개정				
	제지		개정			개정
	화학섬유			개정		

구분	유효 기준 방법론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업별 평가방법론 (비금융)	제약				개정	
	통신서비스			개정		
	디스플레이패널					
	메모리반도체	개정				
	전선			개정		
	SI					
	식품	개정 ^(주1)		개정 ^(주2)		
	외식		개정			
	의류		개정			
	건설			개정		
	시멘트		개정			
	해상운송		개정			
	항공운송		개정			
	소매유통	개정	개정			
	발전					개정
	도시가스			개정		
	방송서비스			개정		
	호텔		개정	개정		
	종합상사			제정		
	기타 서비스업					개정
	비금융일반기업					개정
	물류업					제정
산업별 평가방법론 (금융)	은행		개정			
	증권		개정	개정		
	생명보험			개정		개정
	손해보험			개정		개정
	신용카드	개정		개정		
	할부리스업			개정		
	저축은행	개정			개정	
	부동산신탁업	개정			개정	
	대부업		개정			
	금융일반기업	개정				개정
구조화금융 평가방법론	SF 신용평가 일반론	개정		개정	개정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개정			
	Synthetic CDO			개정		
	PF 유동화		개정			

구분	유효 기준 방법론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조화금융 평가방법론	ABCP				폐지	폐지
	소비자금융채권					
	MBS			개정		
	CMBS	개정	개정			개정
	신용카드 매출채권					개정
	자산유동화에 있어 Master Trust 방식의 이해					
	기업 매출채권	개정	개정			
	항공기금융채권				개정	
	일반 담보부채권	개정				
	리스채권		개정			
	SLBS			폐지		
	유동화 익스포저	개정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개정		
프로젝트금융 평가방법론	Project Finance		개정			
	부동산 PF 평가방법론	개정				
	유료도로			폐지		
	회원제골프장			폐지		
	산업단지				폐지	
	발전소		폐지			
	오브젝트금융(Object Finance)				폐지	
공공부문 평가방법론	정부신용평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개정		
	GRE 총론		개정			
	비금융 GRE		개정			
펀드 신용평가	단기금융/채권형 집합투자기구					
	평가방법론					
	펀드신용평가 일반론					

주1) 기존의 곡물가공 및 식품가공 평가방법론을 2019년 12월 31일 식품 평가방법론으로 통합하고 개정함

주2) 기존의 주류 평가방법론을 2021년 12월 31일 식품 평가방법론으로 통합하고 개정함